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316
------	------

2016년 9월 9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6년 8월 12일, 서울특별시장
- 나. 회부일자 : 2016년 8월 16일
- 다. 상정결과 : 제270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5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6년 9월 6일 상정·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문화본부장 고흥석)

가.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정으로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의 설립·운영 및 출연의 근거를 명확하게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재단의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음악연주활동, 음악 및 공연 교육사업, 연주자 육성사업 등

- 정관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임원 및 직원·단원, 이사회 운영, 사업, 예산과 회계 등
-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10조)
 - 임원의 요건과 직무, 음악감독 임면 등
-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안 제11조~제14조)
 - 출연금 교부, 운영재원, 사업연도, 사업계획서·결산서 제출 등
- 재단의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15조~제16조)
 - 운영상황의 보고·검사, 공무원의 파견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함(부칙)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민법」
-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협의사항 :
 - (1) 법무담당관(규지심사) : 규제없음
 - (2) 민관협력담당관(위원회) : 해당없음
 - (3) 예산담당관(비용추계) : 해당없음
 - (4)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 (5)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 개선의견
 - (6) 갈등조정담당관(갈등영향분석평가) : 갈등없음
 - (7)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협의사항 : 해당없음
- 기 타 :
 - (1) 입법예고(2016. 6. 23.~ 7. 13.) 결과 : 별도 붙임
 - (2) 비용추계 등 자료 : 별도 붙임
 - (3)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별도 붙임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김남중)

가. 제정안 개요

- 동 조례안은 현재 「서울특별시 출연 예술단체 설립·운영 조례」에 의해 재단법인으로 운영되고 있던 서울시립교향악단의 설립·운영 및 출연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서울시립교향악단의 명칭을 명기한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으로 조례를 정비하여 제안된 제정안임

나. 조례 제정 배경

- 서울시립교향악단은 「서울특별시립교향악단설치조례」를 통해 김생려를 1대 상임지휘자로 하여 1957년 8월 1일 출범하였으며, 1978년 세종문화회관이 개관됨에 따라 「서울특별시세종문화회관 설치조례」에 의해 국악관련악단, 무용단 등이 포함된 예술단으로 편입되었음
- 「서울특별시 출연 예술단체 설립·운영 조례」는 당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의 7개의 예술단을 단체별로 법인화 할 수 있도록 근거가 되는 조례를 마련하고자 서울특별시장 방침으로 2004년 11월 추진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예술단체 독립법인화 기본 계획’에 의해 2005년 3월부터 시행되고 있음

서울시립교향악단은 이를 근거로 2005년 6월 설립 등기(등기번호 003307)되어 현재까지 운영 중이며, 최근 「서울특별시 출연 예술단체 설립·운영 조례」가 재단법인의 명칭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설립근거로 모호하다는 의견으로 서울특별시장에 의해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함

※ 서울시의회 법률자문단 중 다수는 「서울특별시 출연 예술단체 설립·운영 조례」가 일반적인 예술단체에 대한 목적, 주요 업무와 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어 현재 서울시립교향악단의 설립·운영 근거로는 부족하다는 의견을 제출

- 또한, 서울시의 재단 설립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서울특별시 지방 출자·출연 기관 설립기준’이 제시한 기본계획의 수립, 설립타당성 검토, 주민공개 및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의 과정이 필요하고, 행정자치부장관과 조례 제정안 입법 예고 직전까지 사전 협의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서울시립교향악단은 새로이 재단을 설립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특별시 출연 예술단체 설립·운영 조례」에 의해 이미 재단법인으로 운영되던 것을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으로 이관하는 것이어서 이러한 과정이 생략됨

서울시의회 법률자문단 3명 중 다수인 2명은 서울시립교향악단의 조례가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으로 새로이 만들어질 경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따라 행정자치부와의 협의를 필요하다고 밝힘

※ 서울시의회 법률자문단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의 각 호에 행정자치부장관과의 협의를 필요하지 않은 경우를 제시하고 있는데, 서울시립교향악단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협의를 필요하다는 의견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출자·출연기관의 설립·운영의 타당성 검토와 설립 전 협의 등)

②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 기관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제4조제3항에 따른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시·도지사는 행정자치부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은 제외한다)에 출자·출연 기관의 설립 승인과 협의 등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그 밖에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기관을 설립하려는 경우

○ 서울시립교향악단은 재단법인화 이후 정명훈 전(前) 예술감독을 필두로 한국을 대표하는 교향악단으로 거듭나기 위해 애써왔으나, 최근 박현정 전 대표이사와 정명훈 전 예술감독의 갈등으로 인해 심각한 명예실추를 겪었고, 예술감독에게 단원의 채용·평가 등의 전권(全權)이 집중되어왔던 점, 서울시 감사결과에서 드러난 예술감독의 경영조직 직원 채용에 부적절한 행사 및 항공권 가족사용 부적정 행위 등 비리행위가 드러나면서 경영과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이러한 사유로 현재 우리위원회에 서울시립교향악단을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의 예술단으로 회귀하는 「서울특별시 출연 예술단체 설립·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이 동 조례안과 동시 심사를 예정 중에 있음

다. 조례안 체계 및 주요내용

○ 동 조례안은 서울시립교향악단의 설립·운영을 위하여 16개 조에

걸쳐 조례의 목적과 주요 사업(안 제1조부터 제5조), 정관 기재 사항, 임원 및 이사회, 음악감독 및 직원 임면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부터 제10조), 출연금 및 운영재원, 사업연도 및 사업에 관한 보고(안 제11조부터 제14조), 지도·감독 및 공무원 파견에 관한 사항(안 제15조부터 제16조) 등을 규정함

본 제정안 2개의 부칙은 시행일과 기존 「서울특별시 출연 예술단체 설립·운영 조례」의 폐지로 구성되어 있음

〈조문체계 및 주요내용〉

조번호	조제목	주요 내용
제1조	목적	서울시립교향악단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제2조	적용범위	「민법」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
제3조	설립	「민법」에 따름
제4조	재단의 사업	서울시립교향악단의 사업수행 범위
제5조	재산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구분
제6조	정관	서울시립교향악단 정관 기재 사항
제7조	임원	이사장·대표이사·감사 등 임원의 임면
제8조	임원의 직무	대표이사와 감사의 직무
제9조	이사회	이사의회의 개최와 수행
제10조	음악감독 및 직원 등	음악감독·직원·단원의 임면
제11조	출연금 교부	서울특별시시장의 서울시립교향악단에 대한 출연금 교부
제12조	운영재원 등	서울시립교향악단의 운영재원 총당
제13조	사업연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따름
제14조	사업계획서, 결산서 등의 제출	서울시립교향악단의 사업계획서 등 제출 의무
제15조	보고 및 검사	서울특별시시장의 서울시립교향악단 지도감독
제16조	공무원의 파견	서울특별시시장의 공무원 파견
부칙		

- 조례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자치법규 전반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총칙규정이며, 조례안 제4조부터 제16조까지는 실제규정과 보칙규정인 본칙규정이라 할 수 있고, 마지막에 부칙규정을 두고 있음

라. 조문별 검토사항

(1) 재단의 법적 성격 : 총칙규정(안 제1조부터 제3조)

- 안 제1조(목적)는 서울시립교향악단이 시민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와 양질의 공연예술 활동 제공을 위한 사업 수행을 하도록 설립·운영 되는데 본 조례안의 제정 목적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
- 안 제2조(적용범위) 및 제3조(설립)에 따르면 서울시립교향악단(이하 '서울시향'이라고 함)의 법적 성격을 「민법」 제32조에 따라 '재단법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서울시향이 서울시 산하의 출연기관이므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따르도록 규정됨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2) 재단의 사업 및 재산(안 제4조부터 제5조)

- 안 제4조(재단의 사업)는 서울시향이 제1조(목적)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와 공연예술 활동 제공을 위한 세부적 사업을 구체적으로 예시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제7호를 '그 밖에 재단의 목적 달성을 위한 부대사업'이라 규정하여 포괄적인 사업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조례안 제4조제6호에는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 시장이 위탁하는 사업’을 규정하여 서울시 위탁사업 수행에 대 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안 제5조(재산)는 서울시향의 재산을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 분하고 기본재산 조성을 출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규정하고 있음

(3) 재단의 조직(안 제6조부터 제10조)

- 안 제6조(정관)제1항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 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일반적인 기재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재단의 정관 변경에 대해 기술하고 있는데, 정관 변경의 경우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정관) ① 출자·출연 기관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 다. 다만, 출자·출연 기관의 형태와 특성이나 업무 내용상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재단의 정관 변경은 중대한 사안을 포함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서울시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해야 한다는 단서조문이 첨가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안 제6조 수정의견 >

제정안	수정의견
<p>제6조(정관) ① (생략)</p> <p>②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p>	<p>제6조(정관) ① (제정안과 같음)</p> <p>②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u>다만, 이 경우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 원회에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u></p>

- 안 제7조(임원), 안 제8조(임원의 직무), 안 제9조(이사회)는 임원의 임면과 구성, 직무 및 이사회 운영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임원의 구성은 현재 「서울특별시 출연 예술단체 설립·운영 조례」 제7조에 의한 10인 이내 이사와 감사보다 확장된 15인 이내로 규정하고 있고, 임원의 직무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벗어나지 않으며, 이사회 규정도 민주적인 운영의 취지를 담고 있어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임원) ① 출자·출연 기관에는 임원으로 기관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감사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둔다. 다만, 이사와 감사를 제외한 임원은 출자·출연 기관별 형태, 특성과 업무내용을 고려하여 정관으로 정한다.

- 안 제10조(음악감독 및 직원 등)는 서울시립교향악단의 소속 단원을 지휘·감독하고 공연사항을 관장하는 음악감독의 임면을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 서울시향 규정의 ‘예술감독’이라고 명기된 직책을 변경하는 것¹⁾이므로 서울시향 규정도 이에 맞추어 변경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다만, 안 제10조제2항의 직원 및 단원의 임면을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 서울시립교향악단의 정관 및 규정이 예술감독에게 막대한 권한을 위임하고 있는 바, 특정인에게 과도하게 의존하는 조직 운영 방식이 2018년 상반기 음악감독 임명 전까지 객원지휘자 체제로 가게 되므로 이러한 변화에 맞게 단원의 선발 및 평가 방식을 공정성과 투명성이 담보

1) 서울시향 예술감독의 영어 명칭은 ‘Music Director’로 그동안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의원들로부터 한글 명칭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던 바, 본 조례안은 이를 수정하여 ‘음악감독’으로 명명하는 것임

되도록 정관과 규정을 바꾸어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재단법인서울시립교향악단 정관>

제3장 조직 및 정원

제24조(예술감독의 직무) ① 예술감독은 다음 각호의 직무를 행한다.

1. 공연연주 및 연습계획 수립
2. 연주곡목 선정
3. 교향악단의 연습 및 기획공연 지휘
4. 부지휘자 임명
5. 단원선정, 단원의 위·해촉, 단원평가를 포함한 고과 등
6. 객원지휘자 및 협연자 초청계획 수립

② 예술감독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재단법인서울시립교향악단 운영규정>

제3장 교향악단의 운영 제1절 단원의 인사

제65조(임용의 원칙) ① 단원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 방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국내외에서 그 실력이 탁월하다고 인정되는 연주자를 특별전형으로 선발할 수 있다.

② 공개경쟁은 전형위원회에서 실기, 면접 등의 방법에 의하여 실시한다.

제66조(임용권자) 단원의 임용은 예술감독의 의견을 참고하여 대표이사가 행한다.

제67조(전형위원회) ① 단원 신규채용을 위한 전형위원회는 3명 이상으로 하고 해당분야에 대하여 풍부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예술 감독이 위촉한다.

② 전형위원의 위촉은 전형 시기마다 1회로 한다.

제68조(단원의 근로계약기간) ① 일반단원의 근로계약기간은 계약기간 중 단원평가결과에 따라 1년, 2년 또는 3년으로 하며, 직책단원의 경우에는 3년을 한도로 하여 근로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신규 채용된 일반단원의 경우 최초 계약기간은 근로계약서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연도 6월말까지로 한다.

(4) 재단의 예산 및 회계(안 제11조부터 안 제14조)

- 안 제11조(출연금 교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해 서울시의 출연금 교부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2조(운영재원 등)는 서울시향의 운영재원이

출연금과 사업수입금, 기타 수입으로 구성됨을 규정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제20조(재정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다.
- ③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교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안 제13조(사업연도)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서울시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따르도록 규정되어 적정한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14조(사업계획서, 결산서 등의 제출)는 서울시의 일반적인 회계 원칙에 따르고 있음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회계연도) 출자·출연 기관의 회계연도는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5) 보고·검사 및 공무원 파견(안 제15조부터 안 제16조)

- 안 제15조(보고 및 검사)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의 서울시향에 대해 재단 운영상황 등을 보고하고 검사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안 제16조(공무원의 파견)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제1항에 따른 것이어서 적정하다고 판단됨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검사·보고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자·출연 기관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지방공무원법」

제30조4(파견근무) ① 임용권자는 그 업무수행과 관련된 행정 지원이나 연수, 그 밖에 능력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을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 공공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을 포함한다), 국내외의 교육기관·연구기관, 그 밖의 기관에 일정 기간 파견근무하게 될 수 있으며,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특수 업무의 효율적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자치단체 외의 기관·단체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6) 부칙규정

- 개정안 부칙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는 본래 서울시향의 설립·운영 근거인 「서울특별시 출연 예술단체 설립·운영 조례」를 폐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현재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의 9개 예술단의 독립 재단법인화의 근거도 함께 폐기되는 것이어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함

마. 종합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기존 서울시향의 설립·운영 근거인 「서울특별시 출연 예술단체 설립·운영 조례」의 내용과 유사하나 ① 서울시립 교향악단의 명칭 기재, ② 서울시립교향악단의 설립 목적 명시, ③ 이사회 인원수 증가, ④ 음악감독의 임면 등 서울시향을 위한 독립적인 조례로의 기능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산하 교향악단이 서울시향처럼 독립된 재단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전무하므로 타 교향악단에 비해 실력·운영 등 모든 부분에서 모범적인 사례가 되어야 하는 바, 현재까지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서울시향 경영진·직원·단원 모두의 노력이 요구됨

※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종합보고서'에 의하면 서울시의 13개 출자·출연 기관 중 2013년 '라'등급, 2014년 '다'등급, 2015년 '라'등급으로 매년 하위권의 평가를 받고 있음

- 첨부 : 1. 서울시립교향악단 세부연혁
2. 음악감독과 상임지휘자 차이점
3. 서울시립교향악단 사업현황

(재)서울시립교향악단 연혁

- 서울특별시립교향악단설치조례 제정 '57. 08. 01.
- 서울특별시립교향악단설치조례 폐지 '76. 05. 31.
 - 서울특별시립악단설치조례 제정에 따라 폐지
- 서울특별시립악단설치조례 제정 '76. 05. 31.
 - 악단은 시립교향악단과 시립국악관현악단으로 함(제3조)
- 서울특별시립악단설치조례 폐지 '78. 12. 29.
 - 서울특별시세종문화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에 따라 폐지
- 서울특별시세종문화회관설치조례 일부개정 '78. 12. 29.
 - 시립예술단체에 교향악단, 국악관현악단, 무용단 등을 둠(제6조)
- 서울특별시세종문화회관설치조례 폐지 '99. 03. 15.
 -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에 따라 폐지
- 재단법인세종문화회관설립·운영조례 제정 '99. 03. 20.
-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예술단체 독립법인화 기본계획(시장방참-745)
 - 예술단체별 법인화 근거 조례 제정(안)마련 및 「교향악단」 독립 법인화 추진 방안 등(설립근거 : 민법 제32조) 04. 11. 26.
- 서울특별시출연예술단체설립·운영조례 제정 05. 03. 17.
-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법인 설립허가(2005-74) '05. 05. 26.
-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설립 등기(등기번호 003307) '05. 06. 01.
- 재단법인서울시립교향악단정관 제정 '05. 06. 01.
- (재)서울시립교향악단 사업 계획 수립(시장방참-8256) '05. 06. 14.
- 재단법인서울시립교향악단 전문예술법인 지정(서울시 2005-1) '05. 09. 24.

- 지휘자의 직책(Title)은 해당 오케스트라 고유의 상황이나 정책적 판단에 따라 다양하게 부여되어왔음
 - 예술감독, 음악감독, 명예계관지휘자, 명예지휘자, 상임지휘자, 수석지휘자, 부지휘자, 수석객원지휘자, 특별지휘자 등
- 특히, 음악감독과 상임지휘자라는 직책은 해외 유명 오케스트라에서도 상황과 정책에 따라 적절하게 적용·운동해왔음
 - 일반적으로 음악감독이 상임지휘자보다 상대적으로 더 책임과 권한을 지닌다고 할 수 있음
- 서울시향은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등 해외 오케스트라의 사례들을 참고하여 다음과 같이 음악감독과 상임지휘자의 직무에 경중을 두어 운영하고자 함

<음악감독의 직무>	<상임지휘자의 직무>
연간 공연의 음악적 방향성 제시	좌동
음악감독 공연의 협연자 및 연주곡목 선정	좌동
음악감독 공연의 교향악단 연습 및 공연 지휘	좌동
단원선정 및 평가를 위한 오디션 참여와 단원 평가결과에 대한 의견 제출	좌동
부지휘자군, 객원지휘자군, 명예지휘자군 임명에 관한 동의	좌동
기타 재단 운영 관련 전반에 대한 협조	좌동
객원지휘자, 협연자 및 연주곡목 선정에 대한 논의 및 동의 - 음악성 방향성과 맞지 않을 경우, 해당공연 내용에 대한 변경 요구 가능	객원지휘자, 협연자 및 연주곡목 선정에 대한 의견제시 -의견 수렴 여부는 대표이사가 결정함
단원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계획 - 비상근 단원 운영의 적정 수준 결정, 취약 악기파트 트레이닝, 인재육성을 통한 단원 흡수 보완책 도출 등	단원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제시 - 의견의 수렴 여부는 대표이사가 결정함
지휘자 육성방안 수립 - 前예술감독은 지휘자 육성방안으로 지휘자 마스터클래스를 신설하고 진행하였음 (마스터클래스 우수 지휘자를 재단의 부지휘자로 흡수하는 선순환 구조 기반 구축 ex. 최수열 부지휘자)	지휘자 육성방안 수행 협조 - 지휘자 마스터클래스의 수행 요청은 가능하나 새로운 지휘자 육성방안 수립의 의무는 없음

■ 음악감독과 상임지휘자 차이

일반적으로 영미권 오케스트라에서는 음악감독(Music Director)을 유럽대륙에서는 상임지휘자(Chief Conductor 또는 Principal Conductor) 직책을 사용한다.

오랜 역사를 가지고 국가의 지원으로 단원들이 중심이 되어 성장해온 유럽의 오케스트라 문화에 비해 신생국가 미국의 오케스트라는 재원을 지원해주는 개인들에 의해 오케스트라들이 성장해왔고, 그 역사 역시 100년 남짓으로 비교적 짧다. 미국에서는 짧은 시간 내의 고속성장을 위해 강력한 지도자 중심의 오케스트라의 성장이 선호되었고, 이에 따라 음악감독의 영향력은 유럽에서의 상임지휘자보다 강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 오케스트라에서 음악감독의 영향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오케스트라의 로고이다. 많은 미국 오케스트라의 로고는 음악감독의 이름이 포함된다(유럽의 오케스트라에서는 없는 일이다). 오케스트라의 브랜드 이미지가 음악감독에 따라 달라질 정도로 음악감독의 오케스트라에 대한 막강한 영향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오케스트라의 로고는 새로운 음악감독의 부임에 맞추어 변경되기도 한다.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의 경우, 지난 20여년 동안 다음 4가지의 로고가 사용되었다.

 <p>THE PHILADELPHIA ORCHESTRA WOLFGANG SAWALLISCH <i>Music Director</i></p>	 <p>THE PHILADELPHIA ORCHESTRA CHRISTOPH ESCHENBACH <i>Music Director</i></p>
<p>① 음악감독 볼프강 자발리쉬</p>	<p>② 음악감독 크리스토프 에센바흐</p>
 <p>The Philadelphia Orchestra Charles Dutoit Chief Conductor Yannick Nézet-Séguin Music Director Designate</p>	 <p>The Philadelphia Orchestra Yannick Nézet-Séguin Music Director</p>
<p>③ 상임지휘자 샤를 뒤투아 음악감독 내정자 야닉 네제 세갱</p>	<p>④ 음악감독 야닉 네제 세갱</p>

※③의 경우, 상임지휘자 샤를 뒤투아 단독으로는 로고에 포함되지 못하였으나, 음악감독 내정자로 야닉 네제 세갱이 선임되면서 내정자의 이름과 함께 로고에 포함되었다.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는 크리스토프 에센바흐 사임이후 다음 음악감독 선임을 위한 기간을 고려한 4년 동안 샤를 뒤투아에게 상임지휘자(chief conductor) 직책을 주었다. 뒤투아는 상임지휘자로서 신입단원 오디션, 단원 영구직책 부여, 펀드레이징에 역할이 주어졌고, 객원 지휘자와 그 프로그램에 자문을 할 수는 있었다. 하지만 음악감독처럼 본인 공연 이외의 오케스트라 공연에 대한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었고, 단원들 징계에 대한 권한도 없었다.

(참고)

 <p>빈 필하모니커</p>	 <p>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p>
 <p>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p>	 <p>LA 필하모닉</p>

첨부3

서울시립교향악단 사업현황

구분	주요사업	2016 예산서 기준	
		사업예산	실공연횟수
1. 음악연주활동	1) 정기공연	2,543백만원	39회
	2) 기업공연 및 외부출연	227백만원	8회
	3) 신년음악회, SPO DAY, 서울음악회	392백만원	5회
	4) 찾아가는 음악회 - 우리동네음악회(관현악), 우리동네음악회(실내악), 퇴근길 콘서트, 함께하는 희망음악회	203백만원	62회
	5) 야외·기념 음악회 - 어린이날음악회, 광복절기념음악회, 강변 음악회	434백만원	3회
	6) 선도하는 음악회 - 리허설룸 콘서트, 서울시향의 음악극장	37백만원	7회
	7) 순회공연	400백만원	3회
2. 음악, 공연 교육사업 및 조사, 연구	1) 음악이야기	35백만원	3회
	2) 비바 시리즈	15백만원	3회
	3) 음악수업2교시	23백만원	6회
	4) 콘서트미리공부하기	8백만원	20회
	5) 해외 신작위촉 활동*	33백만원	-
	6) 음반발매	92백만원	-
	7) 기타 일반사업 - 전산개발, 월간지발매, 회원/후원/협찬사업, 디자인물제작 등	405백만원	-
3. 연주자 육성사업	1) 바티브라스 아카데미	145백만원	-
	2) 오케스트라 마스터클래스	10백만원	-
	3) 지휘 마스터클래스	10백만원	-
	4) 작곡 마스터클래스	10백만원	-
	5) 단원 트레이닝	20백만원	-
4. 공연예술시설의 관리, 운영	1) 서울시 클래식 콘서트홀(추진중)		-
5. 국내 외 공연예술단체 교류, 협력	1) 예술의전당, 정동극장, 중국 국가대극원 (NCPA) 등과 MOU 체결		-
6.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서울시 위탁사업	1) 우리동네예술학교(2015년까지 진행)	863백만원	'15년 예산

※ 본 사업구분은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제4조(재단의 사업)에 따른 구분임

■ 서울시립교향악단 주요사업 내용

주요사업	내용
1-1) 정기공연	- 수준 높은 공연기획으로 교향악단 예술적 발전을 추구하고, 서울시민들에게 클래식 음악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 제공
2-2) ①기업공연 및 ②외부출연	① 기업과 함께하는 음악회를 개최하여 재단 수익을 확보하며, 기업고객에게 서울시향의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고, 클래식 음악의 저변을 확대 ② 국내 타 예술단체와의 합동 공연 등을 통하여 동반 발전에 일조하며, 재단의 수익을 높임
1-3) ①신년음악회, ②SPO DAY, ③서울음악회	① 새해를 맞아 신년을 축하하며, 한 해를 여는 공연을 기획함 ② 서울시향의 열정이 담긴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후원회, 전체 패키지 구매자, 국내외 공연관계자, 기자단, 평론가 그룹 등을 초청하여 후원과 지지에 대한 감사 의미 전달 ③ 서울광장 야외무대, 성수동 구두거리 창고, 동대문 DDP 광장 등 서울의 도심속 아이콘 장소에서 시민들과 호흡하는 공연을 기획함
1-4) 찾아가는 음악회 - ①우리동네음악회(관현악), ②우리동네음악회(실내악), ③퇴근길 콘서트, ④함께하는 희망음악회	① 서울시 자치구를 방문하여 수준 높은 관현악 공연을 무료로 선사하여 클래식 음악의 대중화 선도 및 서울시민의 오케스트라로서의 브랜드 강화 ② 서울시 자치구내 문화소외계층을 주요 대상으로 고루고루 직접 찾아가서 영화·광고 등을 통해 친숙한 클래식 음악을 실내악의 형태로 들려줌으로써 시민과 오케스트라간의 정서적 유대감 형성 및 문화향유 기회 제공 ③ 광화문, 서소문 인근 퇴근 시간 직장인과 관광객 등이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음악회로 시민 문화 복지 향상 ④ 아동·청소년시설, 도서/벽지학교 등과 같은 문화예술을 접하기 어려운 문화소외계층을 직접 찾아가서 무료 실내악 음악회를 진행함으로써 음악교육과 더불어 클래식 음악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1-5) 야외·기념 음악회 - ①어린이날음악회, ②광복절기념음악회, ③강변음악회	① 어린이 및 가족단위의 관객에게 클래식 음악과 다양한 음악의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음악회 ② 서울시립교향악단의 대표적인 기념 음악회로 광복절의 의미를 기리는 무대로 전통 클래식 음악 위주의 편성을 탈피, 다양한 음악적 시도를 통해 시민들이 즐겁게 즐길 수 있는 여름음악 축제로 승화 ③ 서울시향의 대표적인 야외공연으로 서울의 상징이자 시민들의 대표 휴식공간인 한강에서 진행하며, 전통 클래식을 비롯한 다양한 장르를 결합한 무대로 재단의 연주 무대 다변화를 추구할 수 있는 기회

<p>1-6) 선도하는 음악회 - ①리허설룸 콘서트, ②서울시향의 음악극장</p>	<p>① 평소에 일반관객에게 개방하지 않는 시향 리허설룸에서 공연을 진행함으로써 시민이 보다 친근감을 가질 수 있는 기회 제공</p> <p>② 매 공연마다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표제음악 1곡만을 주제로 선정하여 주제곡과 관련된 배우의 연기와 오케스트라의 밀도 있는 연주를 관객에게 제공하여 깊이 있는 이해와 감상기회를 제공</p>
<p>1-7) 순회공연</p>	<p>- 2013년 서울-베이징 수교 기념 공연 성공을 토대로 마련된 중국 국가대극원(NCPA)과의 관계 및 2015년 산토리홀 초청공연을 기반으로 중국과 일본 수도 등 아시아 순회공연을 기획하며 미주, 유럽 등에서의 초청공연 실적을 기반으로 국제사회에서 문화 도시 서울의 브랜드를 제고하고 재단의 위상을 높임</p>
<p>2-1) 음악이야기</p>	<p>- 서울시향 시내 초·중등학생을 공연장으로 초청, 부지휘자 및 객원 지휘자의 지휘와 해설자의 공연 설명으로, 어린이들에게 오케스트라 및 클래식 음악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여 서울시향의 미래 잠재고객을 개발하고자 함</p>
<p>2-2) 비바 시리즈</p>	<p>- 오케스트라를 구성하는 각 섹션별로 구성된 공연을 해설과 함께 감상 함으로써 악기의 특징을 이해하고, 오케스트라에 대한 관심을 유발할 수 있도록 구성된 교육프로그램</p>
<p>2-3) 음악수업2교시</p>	<p>- 서울시향이 초·중학교로 직접 찾아가 오케스트라와 악기, 공연예절 등의 설명과 함께 음악회를 개최함으로써, 어린이 및 청소년의 오케스트라 및 클래식 음악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서울시향의 미래 고객을 개발하고자 함</p>
<p>2-4) 콘서트미리공부하기</p>	<p>- 서울시향의 회원, 티켓 구매 고객 및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정기연주회 전 연주회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유명 클래식 강사진의 해설 및 강의를 시행. 서울시향 고객들에게 다양한 교육 서비스 제공</p>
<p>2-5) 해외 신작위촉 활동</p>	<p>- 해외 유수의 오케스트라 및 연주단체와 콘소시엄을 이루어 세계적 작곡가의 신작을 공동 위촉, 서울시향 위상 견인 및 해외 홍보를 통한 브랜드 인지도 제고에 기여</p>
<p>2-6) 음반발매</p>	<p>- 녹음작업을 통해 오케스트라의 기량 향상을 도모하고, 보다 많은 시민들이 손쉽게 서울시향의 수준 높은 음악을 접할 수 있도록 음반 발매를 진행함. 또한 국제 클래식 시장에 음반을 계속 선보임으로써 서울시향의 국제 인지도를 향상시키며, 시향의 브랜드와 국가와 도시 브랜드 제고를 이룩함</p>

<p>2-7) 기타 일반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① 전산개발, ② 월간지발매, ③ 회원/후원/협찬사업, ④ 디자인물제작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홈페이지 운영, 경영정보시스템 운영 등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전산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유지보수 ② 정기공연 프로그램북 검용으로 제작하여 공연에 대한 해설 및 홍보를 통한 고객 요구 충족 및 재단사업, 단원을 다양한 주제로 소개하여, 재단 브랜드 인지도 제고에 기여 ③ 안정적인 티켓구매 고객확보, 재단 인지도 확대 및 후원문화 확산을 위한 초석 마련하며 후원인 발굴, 섭외를 통한 재단 지원 확보 및 후원인을 통한 잠재적 협찬후원사를 발굴함 ④ 재단 사업 홍보 및 재단 이미지 제고를 위한 디자인물 제작
<p>3-1) 바티브라스 아카데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향 트럼펫 수석 알렉상드르 바티가 지도하는 신개념의 교수법으로 전문 오케스트라 트럼펫 연주자 양성 프로그램
<p>3-2) 오케스트라 마스터클래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악장과 타악기, 트롬본 수석 등 시향 단원들을 중심으로 국내 전공자 양성을 위해 전공자들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오케스트라 악기 교육 프로그램
<p>3-3) 지휘 마스터클래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감독의 마스터 클래스를 통해 한국 클래식계의 미래를 이끌어갈 차세대 지휘자를 지속적으로 발굴 및 육성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 정착
<p>3-4) 작곡 마스터클래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곡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무료로 세계적 작곡가의 지도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재능 있는 차세대 작곡가를 발굴 및 육성함
<p>3-5) 단원 트레이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 우수 오케스트라의 수석 단원 또는 앙상블 전문 트레이너를 초빙, 단원 기량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p>4-1) 서울시 클래식 콘서트홀 (추진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에서 서울시 클래식 콘서트홀 건립 추진 중이며, 건립 후 운영주체로 검토 중에 있음
<p>5-1) 예술의전당, 정동극장, 중국 국가대극원(NCPA) 등과 MOU 체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공연장 및 단체와 MOU를 체결하여 교류 및 협력 강화
<p>6-1) 우리동네예술학교 (2015년까지 진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내 지역 문화기관들과 협업으로 오케스트라, 뮤지컬 교육을 실시하여 아이들에게 문화의 혜택을 확대하고 교육 및 연주, 공연활동을 통한 자존감과 성취감 제고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소위원회 심사보고 요지 : 구성하지 않았음.

7.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출석위원 전원 찬성)

8. 수정안의 요지 :

조문내용 중 정관개정시 상임위원회 사전보고 단서조항 삽입
및 부칙의 「서울특별시 출연 예술단체 설립·운영 조례」 폐지
조항 삭제

9.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1316
----------	---------

제안연월일 : 2016년 9월 6일
제안자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 수정이유

- 조문내용 중 정관개정시 상임위원회 사전보고 단서조항 삽입
- 부칙 제2조의 삭제

2. 주요골자

- 안 제6조제2항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에 단서를 신설하여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로 변경함.
- 안 부칙 제2조를 삭제하고, 안 부칙 제3조를 제2조로 수정함

3. 참고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6조제2항의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에 단서를 신설하여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로 한다.

안 부칙 제2조를 삭제하고 안 부칙 제3조를 제2조로 수정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p>제6조(정관) ① (생략) ②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p>	<p>제6조(정관) ① (제정안과 같음) ②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u>다만, 이 경우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u></p>
부칙	부칙
<p><u>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u> 「서울특별시 출연 예술단체 설립·운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p>	<p>〈삭제〉</p>
<p><u>제3조(조례변경에 따른 경과조치)</u> (생략)</p>	<p><u>제2조(조례변경에 따른 경과조치)</u> (제정안과 같음)</p>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에게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확대하고 양질의 공연예술 활동을 제공하기 위하여 각종 사업을 수행하는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을 설립·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 「민법」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재단법인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설립) 재단은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4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음악연주활동
2. 음악·공연 교육사업 및 조사·연구
3. 연주자 육성사업
4. 공연예술시설의 관리·운영
5. 국내·외 공연예술단체와의 교류·협력
6.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

7. 그 밖에 재단의 목적 달성을 위한 부대사업

제5조(재산) ① 재단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재단의 기본재산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하며, 그 밖에 구체적인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6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 및 출연금
5. 임원·직원 및 단원
6. 이사회 운영
7. 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
8. 예산과 회계
9. 정관의 변경
10. 해산
11. 공고의 방법
12. 임원의 공석에 따른 직무대행
13.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임원) ① 재단은 이사장 및 대표이사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이사와 1명의 감사를 두되, 이사는 문화예술에 관한 식견과 덕망이 있는 자, 재원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자, 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으로 한다.

② 이사장 및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이 임명한다.

③ 임원의 임기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제8조(임원의 직무) ①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감사는 재단의 회계 및 사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이사회) 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 업무 총괄한다.

④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대표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음악감독 및 직원 등) ① 교향악단에는 소속 단원을 지휘·감독하고 공연과 관련된 사항을 관장하는 음악감독을 두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이 임명한다.

② 재단의 직원 및 단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이사가 임명한다.

제11조(출연금 교부) 시장은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재원 등) 재단의 시설·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 재단의 사업수입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13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4조(사업계획서, 결산서 등의 제출) ① 재단은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결산서류를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세입·세출에 관한 예산·결산보고서 및 발생주의·복식부기에 의한 재무회계 결산서
2.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제1호의 예산·결산보고에 대한 검토의견 및 재무회계 결산에 대한 감사보고서

제15조(보고 및 검사)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재단의 운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 또는 지정하는 자가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의 규정에 따라 재단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례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설립된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은 이 조례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 출연 예술단체 설립·운영 조례」에 따라 재단이 한 행위와 재단에 대하여 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재단이 한 행위 또는 재단에 대하여 한 행위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서울특별시 출연 예술단체 설립·운영 조례」에 의하여 시행 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시행 중인 것으로 본다.